

제21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 조례안상정

(조례 13건)

거창군

#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5-10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5-103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104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5-105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2015-106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15-107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015-10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5-109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2015-110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2015-111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5-112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5-113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65
2015-114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2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현재 조성 중인 승강기전문 농공단지 구역이 2개의 법정리(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리로 편입통합하여 향후 토지관리 및 행정재산관리 시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법정리 구역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 종래 남상면 월평리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 남상면 대산리로 편입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19. ~ 11. 08.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남상면 대산리와 월평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리 명 칭	구 역
남 상 면	대 산 리	종래 대산리 일원 및 종래 월평리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
	월 평 리	종래 월평리 일원 중 214, 1328, 1373-2, 1348, 1372-1, 1373-1, 1594-6, 1594-7, 1598-2, 1598-4, 산6, 산45-14, 산45-15, 산45-18, 산45-19, 1380, 1380-2, 1380-4, 1380-5, 1380-11, 1382-1, 1518, 1518-2, 1520-1, 1520-2, 1526-1, 1527, 1527-1, 1527-2, 1527-3, 1528-1, 1532-2, 1532-3, 1539-1, 1539-4, 1540, 1540-2, 1545-2, 1545-3, 1545-4, 1601-3, 1601-5, 산149-3, 산149-4, 산180, 산185-2, 산193-7, 산193-8, 산193-9, 산194, 산202번지를 제외한 지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3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변화하는 미디어환경과 정부3.0 추진에 맞춰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의 기회 확대와 양방향 군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용어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군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원고료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및 게시판 게시자료 삭제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다. 전자우편ID보급 조항 삭제(제5장, 제14조·제15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4조

○ 「전자정부법」 제9조·제1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29,568천원 반영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라 함은”을 “란 군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소셜미디어”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 말한다.
8.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에 각종 콘텐츠 생산·게재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민원창구 운영

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다만, 이 경우”를 “이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를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

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7조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3장 제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로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를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의 처리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군수가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를 “군수가 정하는 민원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를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5장 제목 “전자우편 ID 보급“을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 등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p> <p>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p> <p>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p> <p>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라 함은 「<u>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p> <p>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조(목적) -----<u>군</u>-----</p> <p>제2조(정의) -----<u>각 호</u>-----</p> <p>1.-----<u>이란</u>-----</p> <p>2.-----<u>이란</u>-----</p> <p>3.-----<u>란 군이</u>-----</p> <p>4. "<u>전자민원창구</u>"란 「<u>전자정부법</u>」 제9조 및 <u>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창구</u>를 말한다.</p> <p>5. "개인정보"란 「<u>개인정보 보호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u>정보를</u> 말한다.</p> <p>6.-----<u>란</u>-----</p> <p>7. "<u>소셜미디어</u>"란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등을 서로 공유하고 참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을 의미하며, <u>군이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등을</u>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u>거창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p> <p>② 홈페이지는 다음 <u>각호</u>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p> <p>1. ~ 2. (생략)</p> <p><u>3. 사이버 민원실 운영</u></p> <p>4. 군수와 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p> <p><u>5. 전자우편 ID 이용</u></p> <p>6. 국내·외에 군의 홍보</p> <p>7. <u>기타</u>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p> <p>③ ~ ④ (생략)</p>	<p>8. “기자단”이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소셜 미디어에 각종 콘텐츠 생산·게재 등을 수행하고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p> <p>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 ① <u>군수</u></p> <p>-----</p> <p>-----</p> <p>-----</p> <p>-----</p> <p>② ----- <u>각 호</u> -----</p> <p>-----</p> <p>1. ~ 2. (생략)</p> <p><u>3. 전자민원창구 운영</u></p> <p>4. -----</p> <p>-----</p> <p><u>5.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노령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보장</u></p> <p>6. -----</p> <p>7. <u>그 밖에</u> -----</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생략)</p> <p>② 군수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u>다만, 이 경우</u>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u>자</u>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u>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u>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p>	<p>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각 호의 어느 하나</u> -----</p> <p>----- <u>이 경우</u> -----</p> <p>----- <u>사람</u>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u> -----</p> <p>-----</p>

현 행	개 정 안
<p>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p> <p>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p> <p>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u>군이 관리하는 금융기관 등에</u>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p>	<p>9.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p> <p>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 ----- ----- -----다만,----- -----</p> <p>제3장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창구 운영</p> <p>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p> <p>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민원의 처리 공개 및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 또는 군수가 정하는 부서에서 총괄·관리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u>군수가 정하는 민원에 한정하여</u>----- ----- -----</p> <p>② <u>전자민원창구</u>----- ----- <u>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u>-----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생략)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u>사이버 민원실</u>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u>자</u>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생략)</p>	<p>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전자민원창구</u>-----            -----            ③ -----            -----  <u>사람</u>-----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u>사이버 민원실</u>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u>사이버 민원실</u>을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            -----            -----<u>전자민원창구</u>-----            -----            ② <u>전자민원창구</u>를-----            -----            -----</p>
<p>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생략)            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에 따른-----            -----</p>
<p><u>제5장 전자우편 ID 보급</u></p>	<p><u>제5장 소셜미디어 운영</u></p>
<p>제14조(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군수는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u>전자우편 ID</u>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u>이용을 활성화</u> 하여야 한다.</p>	<p>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u>군정홍보, 인터넷 이용자와의 소통·공감</u> 등을 위하여 <u>소셜미디어</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u>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u>을 위하여 <u>기자단</u>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u>우수 활동자</u>를 위한 <u>교육, 워크숍</u> 등을</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p> <p>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p>	<p>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③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 거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 제14조(소셜미디어의 설치·운영)

-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자단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우수 활동자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군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군수는 기자단 등에게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보상금, 상품, 명함, 단체복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2. 미첨부 근거 규정

###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환 철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4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법령개정에 따른 주무부처 변경함(안 제4조·제11조·제18조)

○ 행정안전부 ⇒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나. 지원대상사업 삭제함(안 제15조제3항, 제17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삭제(안 제17조제1항·제2항)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운영비 명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제1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전자정부법」 제5조, 제6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제32조의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3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제6조제3항)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역정보화 추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5년마다 수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위촉하다.”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b>지방자치단체</b>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p> <p>4. (생략)</p>	<p><b>제2조(정의)</b>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b>군이</b> ----- ----- ----- -----</p> <p>4. (현행과 같음)</p>
<p><b>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b>수립하여야</b>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군수는 <b>행정안전부장관</b>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p><b>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b></p> <p>① ----- ----- -----<b>5년마다 수립하여야</b>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b>미래창조과학부장관</b>----- ----- ----- -----</p>
<p><b>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b></p> <p>① (생략)</p> <p>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b>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b>에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b></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b>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b>-----</p>
<p><b>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b> ① ~ 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b>위촉한다</b>.</p> <p>1. ~ 3. (생략)</p> <p>④ ~ ⑦ (생략)</p>	<p><b>제6조(정보화추진위원회)</b>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b>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b></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p> <p>② ~ ③ (생략)</p> <p>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li> <li>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li> <li>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li> <li>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li> <li>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li> <li>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li> <li>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li> <li>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li> </ol>	<p>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화 책임관을 둔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 -----<u>행정자치부장관</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조(정보화 교육) 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정보화 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u>행정안전부장관</u>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  -----  -----  -----  -----<u>행정자치부</u>  <u>장관</u>-----  -----</p>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5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조문 신설(안 제4조)
  -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 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자동차를 이전·말소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동차세를 이전·말소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
- 나. 지방세관계법과 중복된 조항 삭제  
(현행) 51개 조문 ⇒ (개정) 9개 조문
- 다. 서류 송달의 방법(안 제5조)
- 다. 교부금전의 예탁(안 제6조)
- 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안 제7조)
-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안 제8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자동차등록령」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군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 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군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군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읍·면장 또는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8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거창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6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축조 완료된 기본안이 내려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지연반영 및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군민의 혼란과 불편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안 제2조)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25조문 ⇒ (개정) 15조문으로 축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던 것을 삭제하여 본문을 간결화함.(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5조)

○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 적용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세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거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주민세

###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나.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장 재산세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을 “거창군세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7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방안” 권고 및 행정자치부의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규격, 모양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

### 2. 주요내용

- 가. 전자수입증지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전자수입증지 사용 명문화(안 제3조)
- 다. 전자수입증지의 표시·규격·모양을 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과 변상책임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마. 수입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바.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기 위한 부칙 신설(부칙 제2조)
- 사.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및 보관, 출납, 판매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규정 삭제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137조(수수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0. 15. ~ 11. 03.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 증명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또는 발급기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발급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 ①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

③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정산일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기·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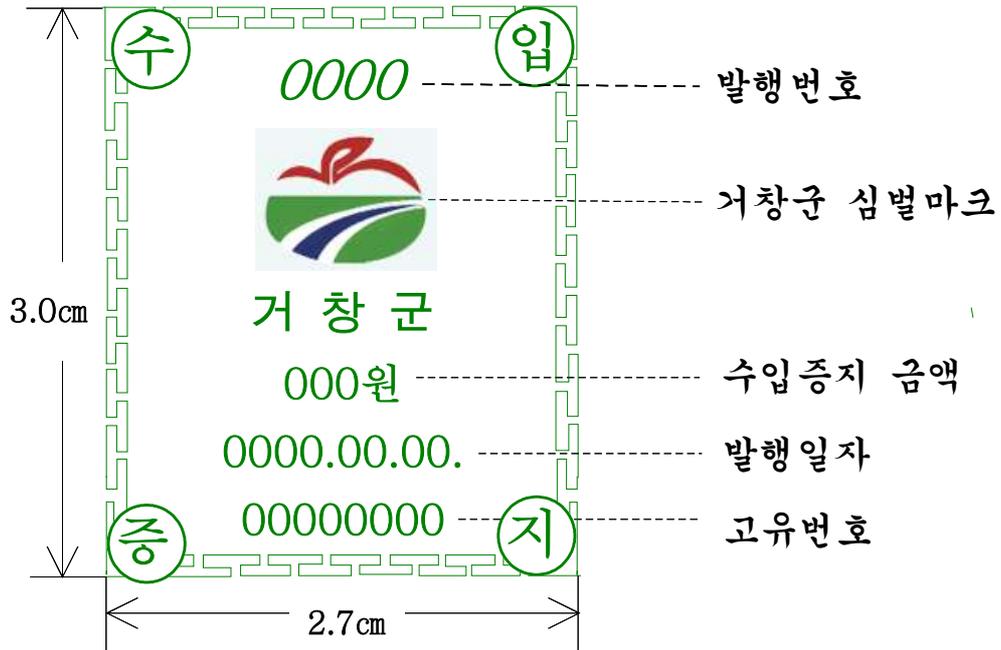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별표 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제1항 관련)



※ 인영 색상 : 녹색

[별표 2]

### 고무인 (제5조제3항 관련)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3.0cm	20 . . .	
↓	부서명:                      담당자:                      (인)	
←	7.0cm	→

[별지 서식]

### 수입증지 일일결산 대장

년 월 일

결 재			

총 괄

고 변 유 호	총 누계		일 계		전날까지 누계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매 수	금 액

금일발행 내역

○ 납부액 :            원 (그날 발행분 :            원, 신용카드결제분 :            원)

○ 권종별 발행내역

연 번	권 종 별	발 행(A)		결 손(B)		정 산(C=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합 계						
	면 제						
	공 용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						

결손사유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8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징수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나.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 개선함(안 제6조)

다. 수수료 감면 대상 중 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개선함(안 제7조)

라.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변경함(안 별표 1의2)

○ 건설기계등록원부 관내·외 구분없이 ⇒ 300원으로 통일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개정사항 반영('14.11.07.개정)

마. 정보공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12.10.개정)별표의 개정사항 반영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3조 별표 23,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관련부서(민원봉사과 등) 의견 수렴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7. ~ 11. 1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며,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자에 한한다.”를 “사람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자”를 “장애인”으로 “자가”를 “장애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별표 1의2,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2.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p> <p>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관내)	1통	200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11)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u>세목별</u> 과세증명서	1통	500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전자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li> <li>·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p>○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u></li> <li>- <u>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u>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u>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u></li> <li>- <u>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u></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p>○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09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에 있어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유지( '15.12.31까지 존속기한 규정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조항 신설함.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함(안 제5조)

○ 삭제 : 위원회의 존속기한 2015년 12월 31일

나. 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함(안 제6조)

○ (현행) 건설교통과장 ⇒ (개정) 안전총괄과장

○ 신설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16년 예산 35만원(위원참석수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8항”로 한다.

제4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조언하게 하기”를 “응하기”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18조제7항 중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4조(설치 및 기능)</b>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u>조언하게 하기</u> 위하여 거창군 <u>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p> <p><b>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b> <u>위원회의 존속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b>제6조(구성)</b>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 생활지원실장, <u>건설교통과장</u>,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u>이 경우 제1호의 위촉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u> 1. ~ 3. (생략)</p> <p><b>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b> ① 군수는 <u>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u>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b>제18조(운영위탁)</b> ① ~ ⑥ (생략)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 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u>」를 준용한다.</p>	<p><b>제1조(목적)</b> -----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제8항-----</p> <p><b>제4조(설치 및 기능)</b> ----- -----<u>옹하기</u>----- -----</p> <p>1. ~ 5.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b>제6조(구성)</b>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안전총괄과장</u>----- ----- -----<u>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u>----- 1. ~ 3.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b> ① ----- <u>법 제16조제2항 및 제8항</u>-----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18조(운영위탁)</b>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u>」-----</p>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0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따라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시적 명시하였으나, 우리 군의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가로수위원회를 계속유지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함
- 나. 거창군 가로수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안 제6조)
- 다. 가산금 규정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이므로 삭제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0. 23. ~ 11. 1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반영함(안 제4조제1항단서)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을 “부담금”으로 “때에는 국세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창군 가로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단서 신설&gt;</u></p> <p>② ~ ④ (생략)</p> <p>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p> <p>② <u>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u></p> <p>③ <u>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u></p>	<p>제4조(가로수위원회) ① ----- ----- ----- -----</p> <p><u>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제14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 ----- -----</p> <p><u>&lt;삭 제&gt;</u></p> <p>③ -----부담금을----- ----- -----경우에는----- -----</p>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1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2015. 7. 1)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내용 반영하여 쓰레기봉투 감면대상 구체화함.  
(안 제23조)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나. 용어순화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함.

○ 이라 함은 ⇒ 이란, 당해 ⇒ 해당, 동 ⇒ 같은, 기타 ⇒ 그 밖에,  
규정에 의하여(의한) ⇒ 에 따라(따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및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0. 28. ~ 11. 17.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중전의 제14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3호·제4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의3제2항 본문,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동”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를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한다.

제3장 및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을 “경우에는 환경부가 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의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타”를 “다른”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별지 제1호·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사무실, 화장실쓰레기등 가정쓰레기와 성질,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p> <p>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별표 5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이란----- -----에 따른-----에 따른-----</p> <p>2. -----이란----- -----에 따른-----</p> <p>3. -----이란----- -----에 따른-----에 따른-----</p> <p>4. -----이란----- -----에 따른-----</p>

현 행	개 정 안
<p>5. "대행"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p> <p>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구조물의 철거,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잔재물 (벽돌, 블록등),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p> <p>7. ~ 11. (삭제 2004.02.10)</p> <p>12. "문전수거"라 함은 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자가 직접 상차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p> <p>13. (삭제 2004.02.10)</p> <p>14."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 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p> <p>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5.-----이란----- ----- -----</p> <p>6.-----이란----- ----- -----</p> <p>&lt;삭 제&gt;</p> <p>7.-----이란----- ----- -----</p> <p>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따라----- ----- -----</p> <p>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p> <p>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에 따른-----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 기타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하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조(적용범위) ① ----- -----에 따른-----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p> <p>⑤ ~ ⑥ (삭제 2004.02.10)</p> <p>⑦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에 따른-----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 ----- ----- -----</p> <p>⑦ -----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군수는 제7조의 <u>규정에 의한</u>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u>당해</u>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u>동</u>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 <u>규정에 의한</u>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u>규정에 의한</u> 과태료 부과 및 <u>당해</u>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u>에 따른</u>-----</p> <p>-----<u>해당</u>-----</p> <p>-----<u>같은</u>-----</p> <p>② -----<u>에 따른</u>-----</p> <p>-----<u>에 따른</u>-----</p> <p>-----<u>해당</u>-----</p>
<p>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p> <p>① <u>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u>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p> <p>① <u>공사장생활폐기물</u>-----</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u>규정에 의한</u>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법 제25조 <u>규정에 의한</u>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u>에 따른</u>-----</p> <p>-----<u>에 따른</u>-----</p> <p>② -----<u>에 따른</u>-----</p> <p>-----</p>

현 행	개 정 안
<p>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④ 제1항의 <u>규정에 의한</u>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u>에 따라</u>-----</p> <p>④ --<u>에 따른</u>-----</p>
<p><u>제3장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u></p>	<p>&lt;삭 제&gt;</p>
<p><u>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처리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p> <p><u>②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u>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확보 하도록 명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p><u>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 ③ (생 략)</u></p> <p>④ 군수는 쓰레기 봉투를 납품받을 때 <u>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u></p> <p>⑤ <u>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u> 쓰레기 봉투사양은 "별표 2"와 같다.</p> <p>⑥ (생 략)</p>	<p><u>제16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 ③ (현행과 같음)</u></p> <p>④-----<u>경우</u>-----</p> <p>⑤ <u>제2항에 따른</u>-----</p> <p>⑥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p> <p>2. (생 략)</p> <p>제25조(보고, 검사등)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자료제출 장부검사등의 요구가 있을때 관련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p>	<p>제23조(수수료의 감면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p> <p>2. (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고, 검사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에 따른-----          -----          -----          -----</p>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2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7.15.)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도로법」 등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단순 확인·재기재하여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군민의 불편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도로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함(안 제1조 )

○ 「도로법」 제41조 ⇒ 「도로법」 제66조

나. 실효성 없는 조문 등 삭제함(안 제3조·제4조)

○ 징수의 위임, 점용의 허가신청

다. 상위법령을 단순 확인·재기재하는 내용 변경함(안 제3조 ~ 제6조)

○ 점용료 산정기준 및 조정산식 : 「도로법 시행령」 별표 3·4 적용

○ 점용료 부과징수 및 반환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 등 적용

○ 점용료 감면사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점용료 감면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 규정을 따르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70조·제71조·제73조, 별표 3·별표 4,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15. 10. 19. ~ 11. 18.

2)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를 “「도로법」 제66조”로 한다.

제2조 중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를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제5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별표 2”를 “영 별 표 4”로 한다.

제8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

제9조를 제7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p> <p>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⑤ 군수는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p>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p> <p>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p> <p>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p>

현 행	개 정 안
<p><u>제7조(점용료의 조정)</u>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u>제5조</u>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u>별표 2</u>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u>제5조(점용료의 조정)</u> ----- -----<u>제3조</u>----- ----- ----- -----<u>영 별표 4</u>----- -----</p>
<p><u>제8조(점용료의 감면)</u> ① 법 제4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 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법 제4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법 제4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p>	<p><u>제6조(점용료의 감면)</u> 점용료 감면은 법 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른다.</p>
<p><u>제9조(시행규칙)</u> (생략)</p>	<p><u>제7조(시행규칙)</u> (현행 제9조와 같음)</p>

#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3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폐지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상위법인 「도로법」(‘14.5.21.시행) 제61조,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직접 규정되어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를 폐지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117조,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별표 7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15. 11. 01. ~ 11. 2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114
----------	------------

제출연월일	2015. 11. 26.
제 출 자	거창군수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측정방법 현실화(안 제20조제1항제2호)
- 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근거 신설(안제20조의2)
-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안 제22조제3호, 안 제24조의2)
- 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규정 신설(안 제28조)
- 마.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3조제4항)
- 바. 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2)
- 사.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 아.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증축 시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자. 녹지지역의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5)
- 차.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규정 신설(안 제56조의6)
- 카. 축사 등 농업용시설 건폐율 상향조정(안 제57조)
- 타.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3)
- 파. 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안 제61조의4)
- 하. 군계획위원회 심의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거. 군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규정 신설(안 제73조, 안 제7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개선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15. 11. 5. ~ 11. 25.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를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은”으로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0조의2(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용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

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5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의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 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50퍼센트”를 “60퍼센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9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1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61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임대주택, 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63조제3항 중 “하천”을 “재해·재난”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과 제62조 사이에 제1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2조와 제7장 사이에 제2절(제73조·제74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3조(기획단의 설치 및 업무)**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군계획상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공간계획 관련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제74조(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14조제7호에 따라 기획단은 기획단장을 포함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정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별표 2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생략)</p> <p>1. (생략)</p> <p>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u>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지형도상에 표준단위면적(100m×100m)을 설정하여 단위면적내 등고선의 표고변화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단위면적내의 최고 표고와 최저표고의 차이를 수평거리로 나누어 계산한다.</u></p> <p>3. ~ 4.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lt;신 설&gt;</u></p>	<p>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측정방법을 준용한다.</u></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은-----에 따라-----</u></p> <p><u>제20조의(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u></p> <p>① <u>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u></p> <p>1. <u>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 사업지와 인접한 지역</u></p> <p>2. <u>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u></p> <p>② <u>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u></p> <p>1. <u>교통처리계획</u></p> <p>2. <u>주민편의시설계획</u></p> <p>③ <u>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p>	<p>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p>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도로 가시권의 옹벽·석축의 높이(노출부분)는 3m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6. (생략)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를 적용한다.

<신 설>

-----에 따라-----

1. ~ 2. (현행과 같음)

3. ----- 준용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59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p>&lt;신 설&gt;</p>	<p>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56조의3(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초과할 수 없음)</p>
<p>&lt;신 설&gt;</p>	<p>제56조의4(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 증축 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lt;신 설&gt;</p>	<p>제56조의5(녹지지역 등에 있는 한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li> <li>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li> <li>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li> </ol>
<p>&lt;신 설&gt;</p>	<p>제56조의6(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u>50퍼센트</u> 이하로 한다.</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생략) 1. ~ 18. (생략)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u>&lt;단서 신설&gt;</u></p> <p>20. ~ 21. (생략)</p> <p><u>&lt;신 설&gt;</u></p>	<p>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내의 공장으로서 <u>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u></p> <p>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 ----- <u>제32조에 따라 -----</u> <u>----- 60퍼센트 -----</u></p> <p>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현행과 같음) 1. ~ 18. (현행과 같음) 19. ----- <u>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u> 20.~ 21. (현행과 같음)</p> <p>제61조의3(사회복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군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p> <p>1. 제5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p>
---	--

<p>&lt;신 설&gt;</p>	<p>제61조의4(임대주택,기숙사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 시 허용하는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i> <li>2.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li> <li>3.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li> <li>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li> <li>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li> </ol>
<p>제63조(구성) ① ~ ② (생략)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군계획·건축·도로·하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p>	<p>제6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재해·재난-----          -----</p>
<p>&lt;신 설&gt;</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lt;신 설&gt;</p>	<p>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를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p>



[별표 15] 생산농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호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마.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6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 별표 15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 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유독물 보관·저장 시설과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 관련)

※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사목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가목의 창고(농·임·축수산업용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용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액화가스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 도료류 판매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31조제19호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층수가 3층을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영 별표20 제1호자목 (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군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나목, 다목, 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군이 설치 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자목(1)에서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